

정보환경의 급변화와 저작권

이호홍/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산하의 한국정보검색위원회에서 위원간의 연구의욕 고취와 새로운 검색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 보급을 위해 매월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본 코너는 매월 발표된 주제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정보검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편집자>

I. 머리말

오늘날 널리 주지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 라는 말은 듣고 보기에 이제 진부하기까지 할 정도이다.¹⁾ 그러나 이를 뒤집어 본다면, 향후 정보사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우리나라는 향후의 국가경쟁력 확보가 정보화에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킬 관련법을 제정하는 한편, 각종의 정보화 촉진시책을 펴고 있는 중이다.²⁾

과거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기반시설이 고도의 통신망 부설에 있다는 강조가 있을 뿐, 그에 사용되는 정보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등한시도 한층 가신 감이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층 정보화 사회에 대한 합당한 진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정보화 사회에 대한 진전의 고조화에 수반하여 좀더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아닌 저작권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보의 생산은 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 문화적 요인은 학문과 예술의 성과에 토대를 둔다. 이들 학문적·예술적인 정신적 노작인 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법제도는 저작권 제도인 바,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기본적으로 규율하는 저작권 제도는, 그러나 통신망과 디지털(digital)³⁾

기술에 의하여 창출되는 엄청난 변화에 직면해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도 유용할 저작물의 창작진흥과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작권 제도가 새로운 도전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도전은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정보화 사회를 추구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이하에서는 '인쇄술의 아들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듯이 기술발전과 궤를 같이해온 저작권 제도가 현재 어떠한 기술환경에 처해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II. 정보환경의 변화추이

정보 또는 지식의 전달이 인간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점은 인류사회의 생성과 함께 지속되어 온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중요한 정보 또는 지식의 전달이 오늘날 중대한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다음 아닌 통신망이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등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봉화나 수신호 등에 의한 옛적의 정보전달은 인쇄술과 종이의 발명에 의하여 혁명적 변혁을 겪었으며, 이후 전파 매체가 등장하여 인간에게 보다 편리한 정보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오늘날은 컴퓨터를 이용한 매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 인간의 역사는 정보를 어떻게 획득·처

리·전달하는가에 따라 크게 변화하여 왔으며, 정보를 수집·축적·가공·전달하는 기술개발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 되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의 정보란 인간의 안전욕구와 의식주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초보적 형태의 것이었고 정보량도 미미한 것이었으나,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확산으로 말미암은 매스미디어의 출현은 대량의 정보를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매스미디어로 인하여 대중민주주의의 실현은 물론이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대중산업사회가 창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매스미디어는 정보의 양적 확산이라는 긍정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전달·축적·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크나큰 결함을 노출시켰다. 매스미디어의 정보전달 체계가 일방향성(one-way)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는 소수가 정보를 독과점하는 현상이 빚어졌으며, 정보의 효용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다.

매스미디어가 창출한 정보환경과 달리 오늘날의 통신 네트워크(network)와 결합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한 정보전달은 사회의 모든 지역에서 각 개인 모두가 인간의 지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조금 더 진척된 멀티미디어(multimedia)가 본격적으로 구현되면 다양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물론이고, 네트워크의 초고속화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1)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보와 지식이 중시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오명, 「정보화 사회, 그 천의 얼굴」(한국경제신문, 1988), 212-13면 참조).
 2) 정부는 지난 1995년 7월 임시국회에서 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정보화와 관련된 정부의 시책이 지상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음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3) 0과 1의 숫자에 의한 표현방법을 디지털이라고 하며, 흔히 종래의 아날로그(analogue: "相似形"이라 시역되고도 있다)에 대비되는 말로 쓰이고 있다(정보과학관련위원회 편, 「컴퓨터용어사전」(성인당, 1993), 48면). 이 디지털은 그 정밀성·소형성·복원성·간편성·고집적성·汎用性 등의 활동함으로 인하여 디스크·전자통신·컴퓨터 등에 널리 쓰이는 등 향후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없어서는 안될 견인축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에 관한 상세는,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10(동아출판사, 1992), 214-15면 참조).
 4) S. M. Stewart, International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2d ed.(Butterworths, 1989), p.185.

서 용이하게 얻을 수 있게 된다.⁵⁾

그리하여 정보환경은 종래의 매체에 의한 환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이로 말미암아 산업구조는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형성하게 되며, 인류의 생활방식이나 소비형태도 한차원 높게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한다.⁶⁾ 앞으로의 정보전달 체계는 쌍방향(two-way; interactive)을 비롯한 다용량·다채널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과거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정보전달을 탈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같은 정보환경의 변화를 저작권측 면에서 바라보면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의 환경변화로 볼 수 있다. 태생부터 인쇄매체를 기반으로 형성되었고 매스미디어로 한 번의 격변기를 거친 저작권 제도가 새로운 정보환경으로 말미암아 또 한번의 변혁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 모두가 근본적으로 고도로 발달되고 있는 통신망과 디지털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 구체상을 다음에서 보기로 한다.

III. 정보혁명

정보환경의 급변화에 맞물려 현재 '정보혁명'이란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 사회라고도 지칭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상을 단언적으로 표현한 말이라 할 것이다.

현상적 표현이 그러할지라도 정작 이 정보혁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자에 따라 다양각색인 것으로 살펴진다. 지금까지 제시된 정보혁명에 대한 의미접근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항을 포섭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의한 정보창작의

혁명이다. 정보창작의 혁명이란 디지털 기술의 특성인 복제나 개작(adaptation)의 용이성에서 비롯된다. 디지털 기술은 저렴하며 고선명인 복제가 가능하고, 편집·가공 등이 매우 손쉽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이루어낸다. 이러한 환경은 멀티미디어에 의한 문화의 변혁을 의미한다. 각종의 정보는 디지털로 통합되고, 모든 사람이 균질하며,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구별할 수 없는 혼재된 상황 속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 특정한 저작자에 한정되었던 정보의 창작은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인쇄술 발명 이상의 혁명적 변천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의 주역에 디지털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⁷⁾

둘째, 정보의 유통혁명이다. 정보의 유통혁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정보기반(infrastructure)의 정비와 특히 관련된 것이다. 앞서 본 정보의 디지털화가 진척되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량의 정보수요가 있게 되고 이의 유통이 증대문제로 대두된다. 기존의 네트워크로는 고품질, 대용량의 정보유통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 기반이 되는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여기에는 유명한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⁸⁾가 자리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정보의 전달수단은 특히 의미를 갖게 된다. 다량의 정보를 모든 사람이 신속하게 균질하고 또다른 창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토대가 이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이다.⁹⁾

이상의 두가지 측면에서 기술적 혁신에 의한 정보혁명이 두드러지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각국은 디지털이나 네트워크의 구축이 진입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 상황인 바, 앞으로 20세기 초반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고속도로 부설이 구축

되면 정보혁명의 완결단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⁰⁾

정보혁명 속에서 정보내용은 보다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다양화된다. 그 뿐만 아니라 축적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저장용량이 향상되고 정보의 특화가 가능해져 그 효용가치 또한 증대된다. 이로써 정보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를 다루는 규범인 지적재산권법도 그 중요성을 높여가며, 그 핵심에는 저작권법이 있게 된다.

IV. 대두되는 저작권 문제

위에서 살펴본 정보통신 환경의 혁명적 변화는 지금 사회 각 분야로 하여금 그 파장에 대한 분석과 그 대응책 마련에 여념없게 하고 있다.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고심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측 면에서 바라보더라도 이는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볼 수 있다.

인쇄술에 의하여 태어났던 저작권 제도가 매스미디어로 한 번의 격변기를 거친 뒤 정보통신 환경의 급변으로 말미암아 또한번의 변혁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사실의 변화에 밀접한 법'¹¹⁾이라는 호칭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저작권 제도는 바야흐로 새로운 변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 제도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소산으로 무체적 의미형상의 하나인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일종의 무체재산권의 하나인 저작권을 부여하고, 이의 생성이나 변동, 침해와 구제 등의 저작권 관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처럼 저작권 제도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작물이 인간의 창의와 노력의 산물이므로 그

5) 이러한 현상을 매체에 국한하여 종래의 것과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특징화시킬 수 있다. ① 대중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과 개인커뮤니케이션(personal communication)이 병행된다는 점. ② 송신자의 전달기술과 수신자의 수용기술이 동시에 발전함으로써 송수신 과정에서 대등성이 일반화한다는 점. ③ 전통적인 매체간 구분장벽이 허물어지는 매체간의 융합(convergence of media)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 ④ 상호연관성은 뉴미디어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매체간 메시지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 ⑤ 기존의 매체가 지니는 동시성(synchronism)이 탈피되고 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메시지가 공급되는 비동시성(asynchronism)을 지닌다는 점. ⑥ 정보의 흐름이 일방형에서 쌍방향으로 바뀐다는 점(이에 관한 상세는, 최창섭, "문화미디어의 변모와 제도적 수용", 문화법 편, 저작권세미나(후기산업사회 문화의 전망과 창작인의 보호) 주제발표집(1991. 11), 57면 참조).

6) 이같은 질적 향상의 현상은, 미국이 정보고속도로 구축계획을 추진하면서 내 걸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everything for everyone)이라는 구호로 적절히 표현된다 할 것이다.

7) 이 점에 관한 상세는, 中山信弘, "著作權保護と情報利用の流通促進の基本的觀點," (ジュリスト), no.1057(1994. 12), 49면 참조.

8) 정보화 사회의 고도화에 때 놓을 수 있는 "기술적 기반" 또는 "대동맥"으로 지칭되고 있는 이 정보고속도로는 정보통신계에서 매체별 통신망이 통합되고 보다 영역을 넓힌 "종합정보통신망"(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ISDN)이라 불린다. 앞으로 이 종합정보통신망은 "광역대중정보통신망"(Broad Band ISDN)으로 이행하다가 결국엔 이 양자가 합쳐지는 "종합지적통신망"(Universal & Intelligent Communication Network: UICN)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관한 상세는, Bruce L. Egan, Information Superhighway: The Economics of Advanced Public Communications Networks, 통신개발연구원 역, "정보고속도로: 첨단 대중통신망의 경제성", 통신정책자료 93-04(동 월, 1993), 9-53면 참조).

9)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中山信弘, 前掲論文, 50면 참조.

10) 정보고속도로와 더불어 중심슈바이클의 부설작업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제국에서 이미 1980년대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이의 완성은 선진제국이 대개 오는 2010년으로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2015년으로 할 것임을 확정 한 바 있다. 국제적인 부설계획도 활발하게 수립되고 있는 바, 미국의 "전세계정보통신기반"(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 계획(이에 관한 상세는, 최병덕, "초고속정보망과 경제전망", (중앙일보), 1994. 11. 21, 25-26면 참조), EU의 "Bangemann" 계획(이는 유럽산업위원회 위원인 Martin Bangemann씨를 주축으로 하는 그룹이 기초한 유럽의 정보고속도로 계획이다. 이에 관한 상세는, WIPR, vol.8(Sept. 1994), p.263 참조),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연결하는 일본이 주창한 "아시아정보통신기반"(Asia Information Infrastructure: AII), 우리나라가 주창한 "아시아-태평양정보통신기반"(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APII)이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다(이에 관한 신문보도는, (한국일보), 1994. 11.16, 5면 참조).

11) 이를 일러 "기술 발달의 반영이 저작권 제도이다"라고 단언하기도 한다(S. M. Stewart, op. cit., p.185).

12) 저작권의 근거론에 관한 상세는, Francis J. Kase, Copyright in Continental Europe: Its Development, Legal Theories and Philosophy(South Hackensack: N. J. Fred B. Rothman, 1967), pp.3-27 참조.

산출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극히 당연한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¹³⁾

정책적으로 본다면 저작권 제도는 무엇보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을 촉진시키고 그럼으로써 문화발달을 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역사상 문화발달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제도도 저작권 제도가 손꼽히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부여된다. 배타적 지배권인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부여됨으로써 저작자는 인격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켜 향유할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충실히 그리고 극대화시킬 것을 약속하고 이용하여야 한다.¹⁴⁾

만일 그렇게 이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자가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허락없이 이용될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지배권이 발동된다. 무단 이용자에게는 민, 형사적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 제도는 기초적으로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상응한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운영된다. 출판의 경우는 복제·배포권이 미치고, 방송이나 공연의 경우에는 방송권과 공연권이 미치고, 사진저작물 등의 경우는 전시권 등이 미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작자의 이익이 확보되어 왔다. 그중 복제권은 처음부터 아직까지 저작권에서 중추적이며 근간적인 권리로 취급되었다. 지금까지 모든 저작물은 복제를 통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복제권을 통하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유하자면 지금까지는 병에 들어 있는 음료수를 마셔 왔지만 앞으로는 병없어도 음료수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본 통신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저작권 제도는 변혁을 겪지 않으면 안된다. 애초에 인쇄매체를 기반으로 형성된 저작권 제도로서는 그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송이나 음반이 나타나 변혁을 겪었던 것보다 더 심한 변혁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 대두되는 저작권 문제는 대략 다음과 같이 꼽아볼 수 있다.

첫째, 저작물 등에서의 접근의 용이성으로 대량 이용 등을 수반하고 그에 힘입어 또다시 대량제이용 등을 거의 무한정으로 확산시키는 바, 이에 따라 수많은 이들 이용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당해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

기된다. 저작물 이용촉진을 통한 문화발달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생각할 때 이같은 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¹⁵⁾

둘째, 많은 자본과 노력을 투입한 자료나 자료수집물이 수없이 등장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독창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아무런 법적 보호없이 방치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발생된다. 과거에 비하여 수없이 나타날 수 있으며, 수많은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이들 수집(물)에 대하여 달리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같은 자료(물)의 산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수집물을 '사실적저작물'(fact-based works)이라고 하는 새로운 범주의 저작물로 정하여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견해가 실제 등장하고 있다. 크게 보아 같은 범주의 것으로 보이는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이미 유럽공동체(EU) 지침(directive)에서 결정났으며, 수년래 논의되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전문가회의에서도 하나의 독자적인 의안으로 채택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또하나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위기'이다. 고도 정보사회에서는 쌍방향으로 정보가 교류되는 바, 이로 인하여 축적되어 있는 저작물을 그 이용자가 2중 3중으로 편집 내지 가공을 매우 손쉽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저작자의 인격권 중 특히, 동일성유지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저작인격권의 보장과 저작물의 이용촉진을 위한 균형있는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넷째, 저작물의 공중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된다. 현재 각국은 저작물 이용의 새로운 현상을 둘러싸고 포괄적으로 이들 이용을 처리할 수 있는 공중전달권에 관한 관심이 높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아직 완결된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나, 일시적 고정이라든가 현시, 방송, 공연, 배포, 송신 등을 둘러싼 세부적 문제를 벗어나 한꺼번에 저작자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집중관리체제의 확립문제도 빼 놓을 수 없다. 고도 정보사회에서는 수많은 저작물이 창작되고 이용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원저작물에 대한 소재 파악, 이용허락 조건, 대가의 객관화와 지급, 저작권의 관리 등의 문제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보의 이용유통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여섯째, CD-ROM 등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제작자에 대한 별도의 법적 보호문제도 제기되는 문제이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제작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바, 이 제작자에게 그에 뒤따르는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면에서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통신망을 통하여 공급하는 공급자에게도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저작물 등의 전달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기존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을 저작권접점자로 보호하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그 소프트웨어 공급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보환경의 급변화에 기인하여 제기되는 기존 저작권 제도상의 문제는 많다. 예컨대, 정보제공자에 대한 법적 보호, '현시권'(display rights), 부분 복제, 통신망운영자에 대한 책임, 저작권관리정보, 기술적보호장치에 대한 법적 대응문제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다.

V. 맺는말

지금까지 알아 본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저작권상의 문제점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나 각국은 분주한 대응의 나팔을 불고 있다. 저작권 제도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점검 내지 검토가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합의를 보아 그에 대응한 자국내 또는 국제규범이 마련된 것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국가가 검토 내지 점검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지식과 정보가 증시된다는 의미를 지닌 정보사회에서는 특히, 저작권 제도가 정보를 규율하는 직접적인 법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설정과 운영은 아주 중요하다.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편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부문이 지식과 정보부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아이 엠 에프시대'를 극복하고 고도 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저작권에 관한 인식을 함께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의 제도적 대응에 모두가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착오를 줄이고 보다 나은 제도개선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3) 이 점에서 착안하여 저작권 제도는 자본주의에 터잡고 있다고 한다.

14) 이에 관한 상세는, 甲田正夫, 『轉機にしかかった著作権制度』(『コピライト』, no.389(1994. 10), 2-4면 참조).